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1. 기술료 등 납부고지서를 KAIA에서 받았고 납부 유예가 되었는데 3년차에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기술료 등 납부 유예기간 2년 종료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인건비의 50%)이 확정됩니다.
예를들어, 3년차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유예액 합계(A)가 해당 인력의 2년간 인건비의 50%(B) 보다 작거나 같다면($A \leq B$)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감면됩니다.

2. 영리법인이고, 신규채용인력이 총 2개의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고 각각 연구과제의 참여율이 50%라고 하면, 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100%를 집행하면 되는건가요?

☞ 인건비는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집행해서는 안되며, 신규채용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 별로 각각 집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채용인력이 2개의 과제에 각각 50%씩 참여하고 있다면, 2개 과제중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청년 채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2월 이후 기존의 참여율 100% 조건이 인건비계상률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3. 영리기관입니다. 협약 당시 정부출연금액과 달리 수행기간 중 연구비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체 비목에 대한 연구비 감액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청년의무 인건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청년으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도 삭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현재 과기부 지침상으로는 청년인건비는 ‘인건비계상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청년채용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퇴사후 재입사한 인원은 청년인력에만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현금인건비 계상은 가능한건가요?
- ☞ 퇴사 후 재입사한 인원은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일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5. 참여연구원 중 한명이 6월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7월자로 연구과제 관련하여 신규청년인력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참여연구원 변경시 기존인력→청년신규로 들어갈 수 있나요?
- ☞ 6월 퇴사 예정인 참여연구원은 청년인력이 아니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7월에 새로 채용예정인 인력이 청년인력의 조건을 갖추었을 시 새로 채용한 인력이 청년신규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인듯 합니다. 새로 채용한 인력이 청년인력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청년신규인력으로 인정됩니다.
6. 협약시 계상한 청년인력 인건비 금액보다 실지금액이 줄어들어 연구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추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협약시 계상한 인건비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다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인건비가 현금일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인건비를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7. 제안 당시 공고문에 참여율 100%로 계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1과제 참여율 100%로 채용한 신규 채용 인원을 타과제와 같이 수행하여 계상율 100%로 참여율 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 ‘20.2월 과기부 세부지침에는 참여율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1.1월 혁신법 제정 이후 참여율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21.2월 과기부 세부지침에서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계상률’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1개의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100%로 채용한 신규 인원을 추후 타과제를 같이 수행하여 2개 과제의 인건비계상률 합이 100%라면 2개 과제 중 1개 과제에 대하여 1명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채용인력이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인건비계상률 합이 100%라고 하면 여러 개의 과제 중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8. 1차년도 4월 시작일 경우 6월 채용했을 경우 2차년도 5월까지 유지하여야 1명 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지요?

☞ 고용유지기간은 과제 시작시점이 아닌 채용시점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시작한 과제의 신규인력을 6월1일에 채용하였다면 다음해 5월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채용확인서 서식은 따로 있나요?

☞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는 진흥원 홈페이지의 아래 경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www.kaia.re.kr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이해 Q&A

10. 연구과제 기간동안 인건비 계상율 100% 유지해야 한다고 하셔서는데, 총 연구기간이 6년이면 1년 차에 의무채용했던 분도 6년차까지 참여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3,4, 차년에 참여율이 줄어들어도 되는걸까요?

☞ 연구참여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기부 세부지침('21.2월)에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채용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월 과기부 세부지침에는 참여율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21.1월 혁신법 이후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고 인건비계상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